

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연구보조비 지급기준 일부개정규칙을
이에 공포한다.

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고 성 환 인

2026년 2월 2일

◎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칙 제2026-1호

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연구보조비 지급기준
일부개정규칙

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연구보조비 지급기준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3.지급기준 가~라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-2) 지원 횟수 : 학술발표 참가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(12월말)내 신청하고, 교수
1인당 연 3회, 연구위원 연 1회

3) ③ ※ 국제학술회의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1인 당해 회계연도(1월~12월) 400만원을
초과할 수 없다.

④ 경비는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12월 개최 학술발표의 경우 회계 마감을
위해 예산집행 사유가 인정될 시 사전 지급할 수 있다.

6) 주의사항 ②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 있는 경우 특수
관계인 논문 공저 참여 검토서(붙임7)를 작성하여 첨부

나-6) 주의사항 :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 있는 경우
특수관계인 논문 공저 참여 검토서(붙임7)를 작성하여 첨부

다-6) 주의사항 ②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 있는 경우
특수관계인 논문 공저 참여 검토서(붙임7)를 작성하여 첨부

- 라-1) ① 참가 결과보고서(붙임 2)를 “제출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한자”를 “제출한 자”로 한다.
- ② 참가 결과보고서(붙임 2)를 “제출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한자”를 “제출한 자”로 한다.
- 2) 지원신청: ① 국제학술회의(국제창작전시회) 참가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(12월말)내 신청
- 3) ③ 총 지원금은 국내학술발표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1인 당해 회계연도(1월~12월)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경비는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12월 개최 학술발표의 경우 회계 마감을 위해 예산집행 사유가 인정될 시 사전 지급할 수 있다.
- 5) 주의사항 ②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 논문 공저 참여 검토서(붙임7)를 작성하여 첨부

<서식> 1, 2을 서식1, 2와 같이 한다.

<붙임> 서식 7을 추가한다.

부 칙(2026. 2. 2. 산학협력단 규칙 제2026-1호)

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학술연구보조비 지급기준 일부개정규칙

◆ 개정이유 ◆

- 국내·외 학술활동 지급기준을 회계연도(1~12월) 신청·정산 체계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여 세출예산집행 지침을 준수하고자 함
- 국내·외 학술발표 및 논문게재 관련하여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사전 공개 양식을 추가하여 연구 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

◆ 주요내용 ◆

- 국내·외 참가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을 당해 회계연도(12월 말)내 신청으로 수정하고, 지원 금액을 1인 당해 회계연도 연간(1~12월) 지원으로 수정함(3-가-3~6))
- 국내·외 학술발표 및 논문게재 관련하여 ‘특수관계인’ 참여에 대한 조항 추가(3-가~라)